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봉양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4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봉양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곽향기, 김경훈,
김성준, 김재진, 남궁역,
박승진, 박춘선, 박철성,
송도호, 이민옥, 이병도,
이소라, 이영실, 이은림,
임규호, 임만균, 전병주,
정준호, 최재란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예기치 못한 폭염, 수해,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하여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장만이 아니라,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까지 필요한 상황임.
- 따라서 관련 시책 수립·계획 시행·사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이념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제10호 신설).
- 나. 에너지계획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제2항제4호).
- 다.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).
- 라. 포상 대상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5조제2항)

마. 에너지복지 사업에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에너지법」,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

제3조제1항제8호 중 “생존”을 “일상생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지원”을 “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

제25조제2항 중 “감축”을 “감축, 에너지복지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

제29조제1항 중 “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”을 “확대, 시민참여형 에

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발·이용·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”을 “개발·이용·보급,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기후변화기금”을 “기후대응기금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~ 8. (생략)
- ③ (생략)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,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1. ~ 6. (생략)
- <신설>
- ② ~ ⑥ (생략)

제25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
 ① (생략)
 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활성화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확대,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추진-----
- 5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-

 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
 ① (현행과 같음)
 ② -----

 -- 감축, 에너지복지 -----

 -----.

제27조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 ①
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
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~ 6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29조(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)

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, 신
· 재생에너지 등의 개발·이용·
보급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
전환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
행정·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
한다.

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, 신
· 재생에너지 등의 개발·이용·
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
확대를 위하여 시민·사업자·시
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
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
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
있다.

제27조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 ①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
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

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
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)

① -----

--- 확대,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
및 에너지복지를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개발·이용·
보급,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
에너지복지 -----

-----.

③ ~ ⑥ (생략)

⑦ 시장은 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·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⑧ (생략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----- 기후대응기금-----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

2023101300000022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봉양순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1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제1항제4호에 “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”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3년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27조제1항제4호	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	1,400,550
	취약계층 LED조명 보급	2,724,084

자료: 2023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[붙임1] 2023년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사업설명서

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3. 3월~2023. 12월
- 지원 대상 : 취약계층 이용시설, 취약계층 밀집 지역, 취약계층 거주 시설 등
- 사업의 주요내용
 -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사업
 - 취약계층 차열사업(건축물 옥상, 지붕면 또는 외관면 대상 열차단 기능의 차열페인트 시공)
 - 맞춤형 녹색공간 조성사업(건축물 외관면 그린커튼 또는 벽면녹화, 동네 마을기반 소규모 정원 조성)
 - 빗물관리시설 확충, 보행환경개선사업
 - 야외근로자 쉼터 조성사업

②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3. 3월 ~ 2023. 12월
- 사업내용 : 저소득층, 복지시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(국비매칭사업)
 - 저소득층 2,100가구, 복지시설 221개소
 - 영구임대주택 1단지(강서구 가양4) 1,998가구
- 총사업비 :3,324,268천원(국시비 :2,724,084천원)
 - 국비 1,187,900천원, 시비 399,600천원, 구비 399,600천원
 - 국비 936,000천원, 시비 200,584천원, 서울주택도시공사 200,584천원
- 국·시·구비/서울주택도시공사 매칭사업으로 추진
 - 저소득층 (국비 70%, 시비 15%, 구비15%)
 - 영구임대주택 (국비 70%, 시비 15%, 서울주택도시공사15%),
 - 복지시설 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